

예산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80호
------------------	-------

제출년월일 : 2002. 2. 15.
제출자 : 예산군수

□ 제안이유

군세감면조례개정안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예산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임

□ 주요골자

- 감면조례 설치 목적중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내용 보완(안 제1조)
-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조문정리(안 제4조)
- 등록하는 문화재의 부속토지의 종합토지세의 경감 방법을 종합토지 세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명확히 함(안 제9조제2항)
-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자가 농어촌특산품 생산 단지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와 농수산물가공 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해당되었으나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되어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조문삭제(안 제12조제1항)
- 주차장설치시 신고의무에서 통보의무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정리(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 참고사항

-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 충청남도 세정13400-2252(2001. 12. 17) 시·군세감면조례증개정 조례안 통보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3.(생략)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광역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단서행략)

1.~2.(생략)

②(생략)

1.~3.(현행과 같음)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영위한 자가

그-----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군세의”를 “따라 군세의”로 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조제목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조 중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으로 한다.

제9조의 조제목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조 본문을 제1항으로하고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제1항중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한다.

제15조의2중 “신고”를 “통보”로 한다.

제15조의3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신고”를 “통보”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영위하는”을 “영위한 자가 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따라 군세의 --- ----- -----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 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4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 ----- ----- ----- ----- -----
제9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 3. (생략) <u>< 신 설 ></u>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 ----- 1. ~ 3.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총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
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
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
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
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
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
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 ③(생략)

제15조의2(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
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
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
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
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
한 감면) -----
-----통보-----

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 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5조의3(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제12조 제1항

- 5 -